

자기변호노트

나의 변호사
MY LAWYER



홈페이지

- ❖ 작성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사건 번호 :
- ❖ 작 성 자 :

- 자기변호노트는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제공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자기변호노트는 ① 사용설명서, ② 수사절차에서의 당신의 권리, ③ 자유메모란, ④ 자기변호노트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조사자가 메모를 제지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리세요. 그럼에도 메모하지 못하게 하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검찰청 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로 연락하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와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koreanbar.or.kr) 또는 상담의 '나의 변호사' QR 코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노트 제공 변호사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1 '자기변호노트'가 무엇인가요?

당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당신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였는지, 공정하고 적절하게 수사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자기변호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조사자는 당신이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작성하세요.

2 자기변호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조사받기 전에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 조사받으면서 주의할 점, 대강의 수사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전체를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 무엇보다 실제로 조사받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를 받는 동안 겪은 일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과장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가능한 조사를 받는 도중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기억이 선명할 때 신속하게 작성하세요.

3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다음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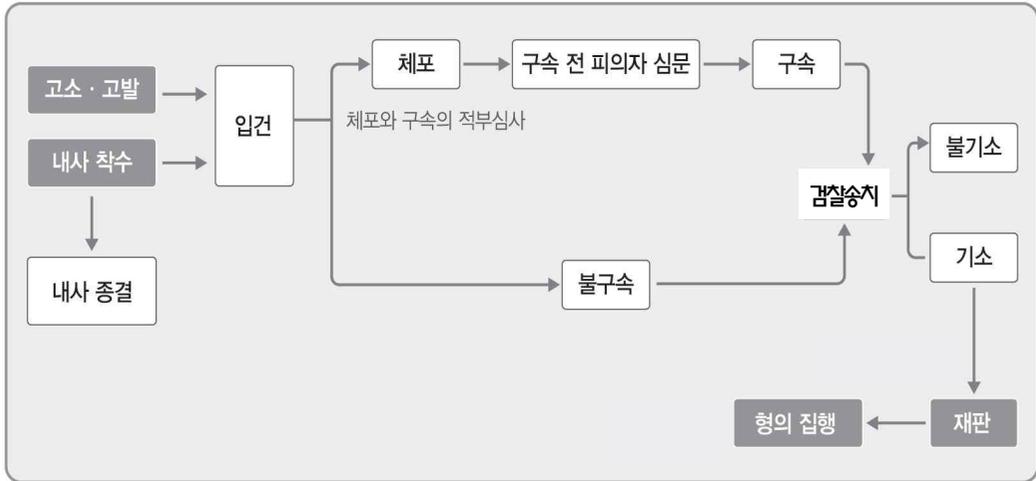
당신이 한 대답(진술)을 기억하여 다음 조사에서도 일관된 대답(진술)을 할 수 있고, 조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가 요구한 자료도 착오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노트를 변호사에게 건네세요. ”

상담 변호사에게 반드시 이 노트를 건네세요. 변호사가 조사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당신을 변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절차에서의 당신의 권리

1 수사의 절차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처분’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당신이 수사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당신에게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의 참여 없는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 또는 피의자 신문을 하기 전에 당신에게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헌법, 형사소송법).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koreanbar.or.kr)와 이 노트 표지에 있는 ‘나의 변호사’ QR코드를 참고하세요.

3 진술거부권

조사자의 질문 전부에 대해 대답(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 대답(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답(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대답(진술)하였는데 그 중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대답(진술)이 있다면 그 대답(진술)은 자백이 되고,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대답(진술)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대답(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면 조사자는 당신에게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날인(이름을 쓰고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음)하라고 할 겁니다. 조서는 당신의 대답(진술)을 조사자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대답(진술)한 내용이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서명날인한 조서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당신이 대답(진술)한 내용이나 의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자에게 고쳐 달라고 요구하세요. 조사자가 고치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서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서 끝부분에 직접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서 작성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조서 사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사본을 상담 변호사에게 제공하면 조력을 받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신문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조사자의 반말과 폭언

조사자는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자가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줄 때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청 인권보호관이나 인권보호담당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에게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ㄷ 심야조사 금지 및 휴식 요청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심야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중에 휴식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와 편의제공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의 성별 · 종교 · 나이 · 장애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 인종 · 국적 · 용모 등 신체조건 · 병력 · 혼인여부 ·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ㄷ 신뢰관계인의 동석

당신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연령, 성별, 국적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나 믿을만한 사람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수사규칙).

ㄷ 수화·문자 통역 제공

당신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수사과정에서 수화 · 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인권보호수사규칙).

7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편의제공

ㄷ 통역과 번역을 받을 권리

외국인은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신문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통역을 요청하고,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구사하는 외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외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㉞ 신뢰관계인 등의 동석 요구

검사 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국적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앉아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㉞ 영사 접견권 통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에게 자국 영사관과 자유롭게 접견, 통신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국 영사관이 체포 구속된 외국인과 접견 또는 통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영사 접견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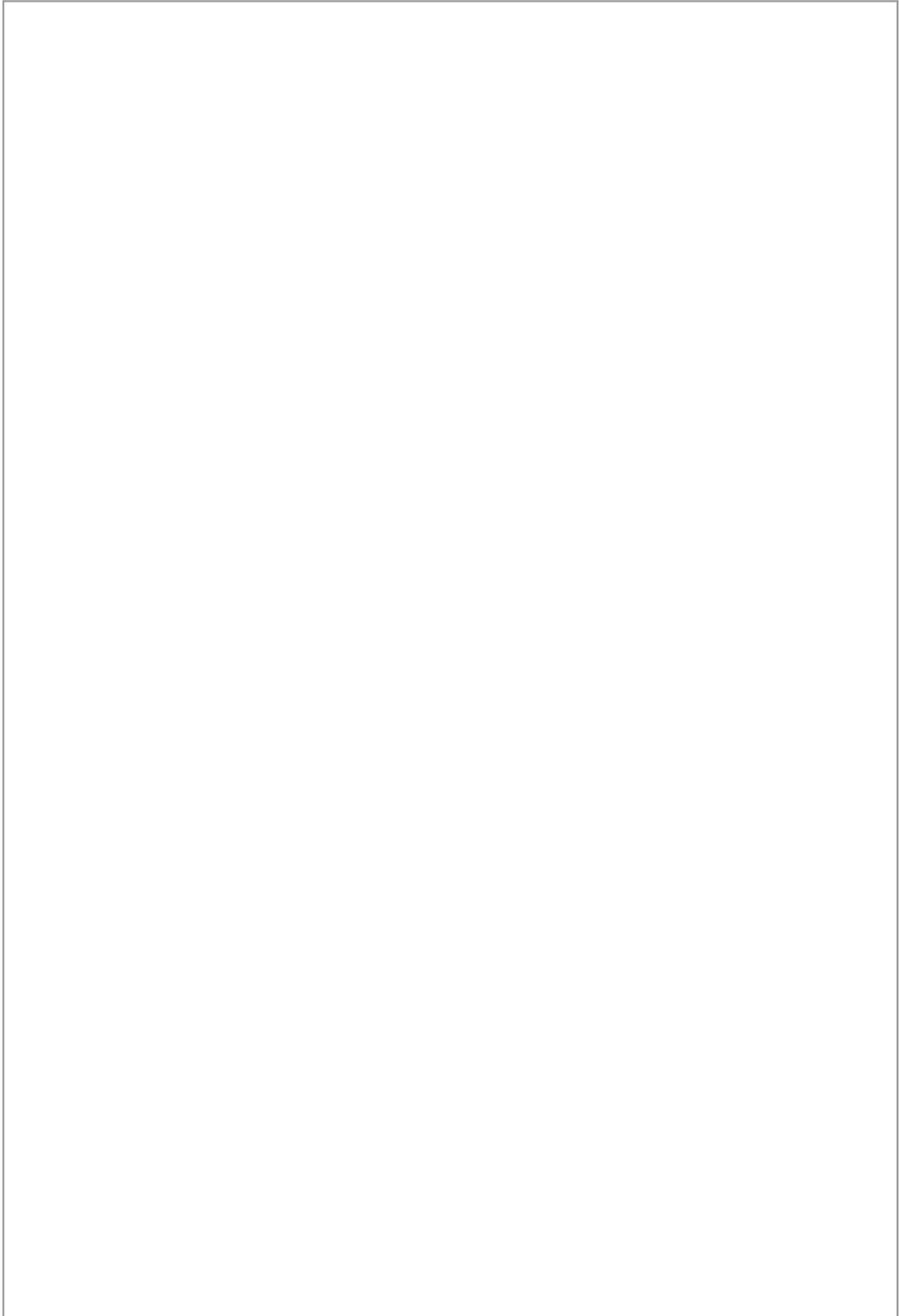
8 정보공개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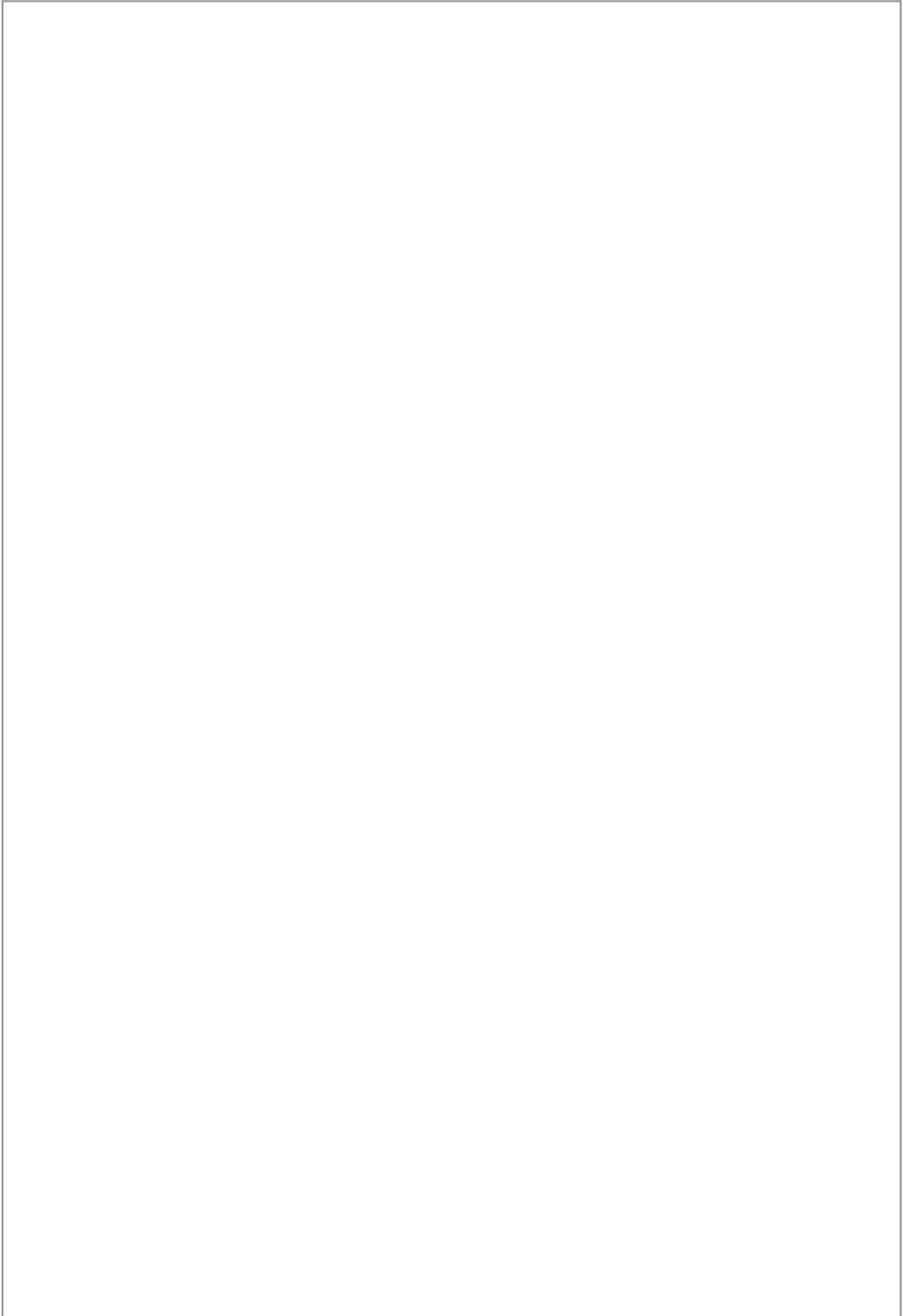
당사자는 수사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수사기관은 비공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공개 신청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고소장과 본인이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처리기한 내에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메모하세요

① 어떤 죄명이나 사건으로 조사받는지, ② 조사자가 제시한 증거가 무엇인지, ③ 당신은 어떻게 대답(진술)했는지, ④ 대질을 하였다면, 대질자가 누구지, ⑤ 대질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⑥ 당신이 제출한 증거가 있는지, ⑦ 조사자가 제출하라는 자료가 무엇인지, ⑧ 변호사에게 꼭 상담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 조사받으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자유롭게 메모하세요.

자유롭게 메모하세요





5 조사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질문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연령, 성별, 국적 등 사정으로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조사자가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나요?
 예 아니오
- ② 조사자에게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거나 불편한 점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였나요?
 예 아니오
- ③ 조사자가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게 하거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었나요?
 예 아니오
- ④ 만약 당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6 외국인 또는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당신이 외국인이거나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이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① 당신은 법률용어를 포함한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말할 수 있나요?
 예 부분적으로만 가능함 아니오
- ② 조사자가 한국의 수사절차를 설명하였나요?
 예 아니오
- ③ 조사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나요?
 예 아니오

- ④ 통역인이 통역하였나요?
 예 아니오
- ⑤ 조사를 마치고 통역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으면서 통역하였나요?
 예 아니오
- ⑥ 통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이해할 수 있었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 이해할 수 없었음
- ⑦ 통역인이 없었거나 당신이 요구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7 당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사항을

- ①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사자에게 추가로 제출할 서류, 제출 기한, 제출할 곳 등을 적어주세요.

- ② 조사 후 변호사와 상담해야겠다고 느낀 사항을 적어주세요.

8 이 노트를 언제, 어디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 조사 중 작성 휴식시간에 작성
- 조사 종료 후 작성(년 월 일 시 분)